

##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1. 보수위원회

#### 다. 권한과 책임

#####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2018년 3월 20일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 FY17기 성과에 따른 변동보상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변동보상 대상자는 당사 임원 중 사외이사, 기타비상근이사 등 비상근 임원 및 일본 본사 파견 임원인 전무이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사장, 대표이사 부사장, 상근감사위원,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이사대우 직급의 모든 임원입니다. 해당 범주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 1명, 대표이사 부사장 1명, 상근감사위원 1명, 전무이사 1명, 상무이사 2명, 이사 2명, 이사대우 4명 등 총 12명을 변동보상 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의 단기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보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을 경우, 해당 직원을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로 지정하여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FY18기 중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로 지정된 직원은 없습니다.

동일한 변동보상 대상자 기준에 따른 FY18기 성과에 따른 변동보상 대상자는 대표이사 사장 1명, 대표이사 부사장 1명, 상근감사위원 1명, 전무이사 1명, 상무이사 3명, 이사 6명, 이사대우 2명 등 총 15명이며, 추후 보수위원회를 통하여 변동보상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15	대표이사 사장 1 대표이사 부사장 1 상근감사위원 1 전무이사 1 상무이사 3 이사 6 이사대우 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